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·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 【2023. 10. 24.(화) 10:00】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·교통위원회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3년 10월 24일 전문위원 배 금 택

#### 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: 2023 - 114

나. 발 의 자: 정장훈 의원 외 14명

다. 발의일자: 2023년 10월 13일

라. 회부일자: 2023년 10월 16일

#### 2. 제안이유

○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하도록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강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(안 제5조)

#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6조, 제16조의3,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22조의2
- 나. 협조부서: 공원녹지과
- 다. 입법예고(2023. 10. 16. ~ 10. 20.) 결과: 의견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#### 가. 제정 취지

○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,

#### 나. 주요 제정내용

-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  - 맨발 걷기, 맨발 산책로의 용어를 정의함
    - · 맨발 걷기: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
    - · 맨발 산책로: 도시공원 내 보행자 통로, 탐방로, 산책로 등의 장소 에서 맨발 건기에 적합하도록 황토 등으로 조성된 흙길

#### ○ 지원 사업 규정(안 제4조)

- 맨발 산책로의 조성·확충, 필요시설의 설치·보수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규정

#### ○ 행정적·재정적 지원(안 제5조)

-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단체, 기업, 개인 등에 행정적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함
- 다만, 특정지원 대상 등을 구체화하여 열거하기보다,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

조 례 안	수 정 안1)		
제5조(행정적 • 재정적 지원) 구청장은 맨발	제5조(행정적 • 재정적 지원) 구청장은 맨발		
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업의 추진을	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• 재정적		
위하여 관련 전문 단체, 기업, 개인 등에	지원을 할 수 있다.		
행정적 •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		

#### 다. 종합 의견

○ 최근 시간과 장소,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맨발걷기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, 이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조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.

<sup>1) (</sup>참고) 서울시 및 서울시 타자치구의 지원관련 조항

<sup>·</sup>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2023.7.18.시행>

<sup>·</sup> 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2023.9.22.시행>

<sup>·</sup> 서울특별시 강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예산의 사용)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. <2023.9.20.시행>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'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'고 규정하고 있는 바.
-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관내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나아가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, 맨발 산책로를 깨끗하게 유지·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, 운동의 효과성과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임.

## 참고

## '맨발 걷기'관련 조례 제정 현황

### □ 맨발 걷기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

(2023. 10월 기준)

	구 분	제 명	소관부서	공포일자	비고
1	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	공원여가 정책과	2023. 7. 18.	제정
2	서울특별시 강동구	서울특별시 강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 원에 관한 조례	푸른도시과	2023. 9. 20.	제정
3	서울특별시 강북구	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	공원녹지과	2023. 9. 22.	제정
4	경기도 부천시	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	공원조성과	2023. 9. 27.	제정
5	경기도 수원시	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 한 조례	공원문화팀	2023. 9. 27.	제정
6	경기도 파주시	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	산림휴양과	2023. 9. 27.	제정
7	경기도 하남시	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	공원녹지과	2023. 9. 27.	제정
8	경기도 용인시	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	공원조성과	2023. 6. 30.	제정
9	경기도 화성시	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	공원조성과	2023. 4. 14.	제정
10	부산광역시 금정구	부산광역시 금정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	공원녹지과	2023. 9. 15.	제정
11	인천광역시	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	공원조성과	2023. 7. 14.	제정
12	세종특별자치시	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에 관한 조례	산림공원과	2023. 10. 4.	제정
13	충청남도 천안시	천안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 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	공원녹지과	2023. 10. 4.	제정
14	광주광역시 동구	광주광역시 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	푸른도시과	2023. 9. 25.	제정
15	광주광역시 북구	광주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	공원녹지과	2023. 7. 25.	제정

	구 분	제 명	소관부서	공포일자	비고
16	대구광역시 북구	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	공원녹지과	2023. 10. 4.	제정
17	대구광역시 수성구	대구광역시 수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 원에 관한 조례	체육진흥과	2023. 6.30.	제정
18	전라북도	전라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지역정책과	2023. 10. 4.	제정
19	전라북도 완주군	완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	건강증진팀	2023. 10. 5.	제정
20	전라북도 익산시	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 한 조례	녹색도시 조성과	2023. 9. 27.	제정
21	전라북도 장수군	장수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 한 조례	보건사업과	2023. 7. 3.	제정
22	전라북도 전주시	전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산림공원과	2023. 3. 7.	제정
23	전라북도 남원시	남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 한 조례	도시과	2023. 7. 12.	제정
24	전라남도 광양시	광양시 맨발걷기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	공원과	2023. 10. 4.	제정
25	전라남도 나주시	나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	공원녹지과	2023. 9. 26.	제정
26	전라남도 순천시	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	공원녹지과	2023. 8. 16.	제정
27	전라남도 여수시	여수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 한 조례	공원과	2023. 9. 19.	제정
28	전라남도 화순군	화순군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	산림과	2023. 9. 26.	제정
29	경상북도 포항시	포항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 한 조례	그린웨이 추진과	2023. 9. 27.	제정
30	경상남도 김해시	김해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산림과	2023. 9. 21.	제정
31	경상남도 남해군	남해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	산림공원과	2023. 8. 16.	제정
32	경상남도 양산시	양산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	공원과 (공원조성팀)	2023. 9. 7.	제정

## 붙 임 관계 법령

#### □ 국민건강증진법

- 제6조(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,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3.>
  -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  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 <개정 1997. 12. 13., 2008. 2. 29., 2010. 1. 18.> [제목개정 2019. 12. 3.]
- 제16조의3(신체활동장려사업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  - 1.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
  - 2.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 · 연구사업
  - 3.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  -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·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19. 12. 3.]

#### □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

- 제22조의2(신체활동장려사업)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  - 1.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
  - 2.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등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 사업
  - 3.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홍보사업
  -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[본조신설 2021. 11. 30.]